

## 100년 Living Trust Center

# 신탁재산과 운용방식의 다양화 방안

2020.07.03 재무학회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100년 Living Trust Center

# Contents

---

01\_신탁이란 ?

02\_신탁활용사례

03\_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100년 Living Trust Center

# Contents

---

01\_신탁이란 ?

02\_신탁활용사례

03\_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 검색어 '하나은행 배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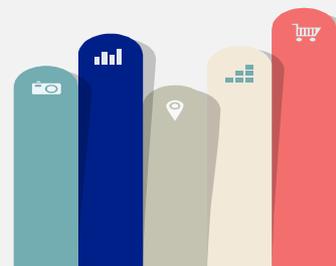
100년 Living Trust Center

01 | 4세대 자산 승계 시대

02 | 1코노미 (1+Economy) 시대

03 | Global 상속 · 자산관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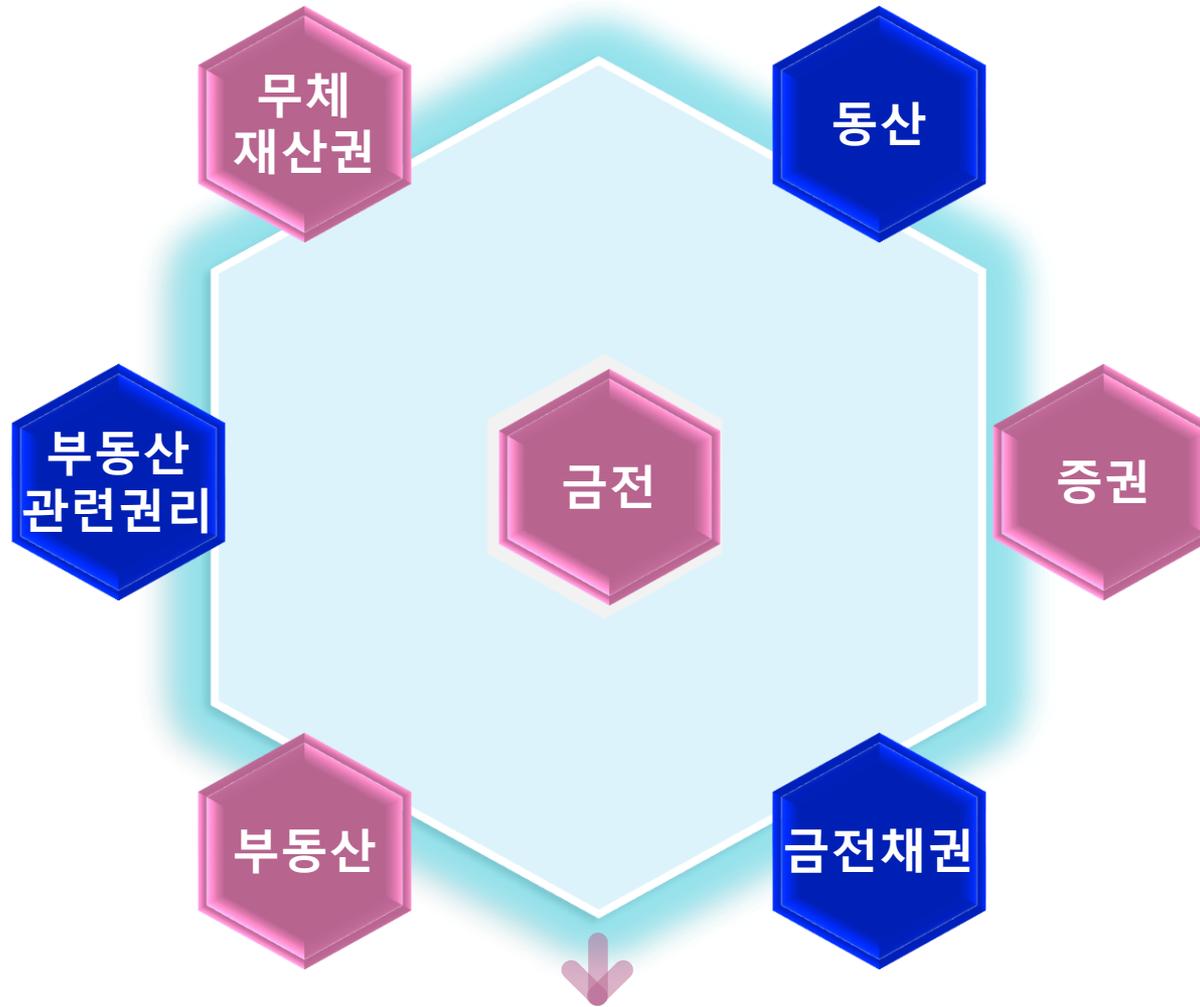
04 | '100년 기업' 승계 시대





**Why Tru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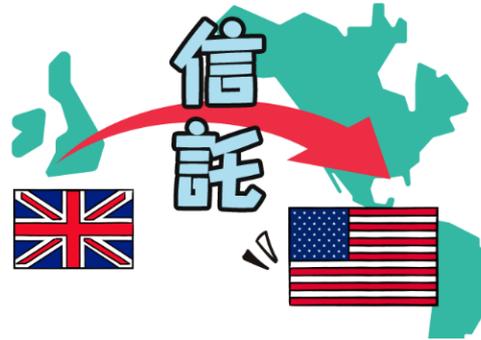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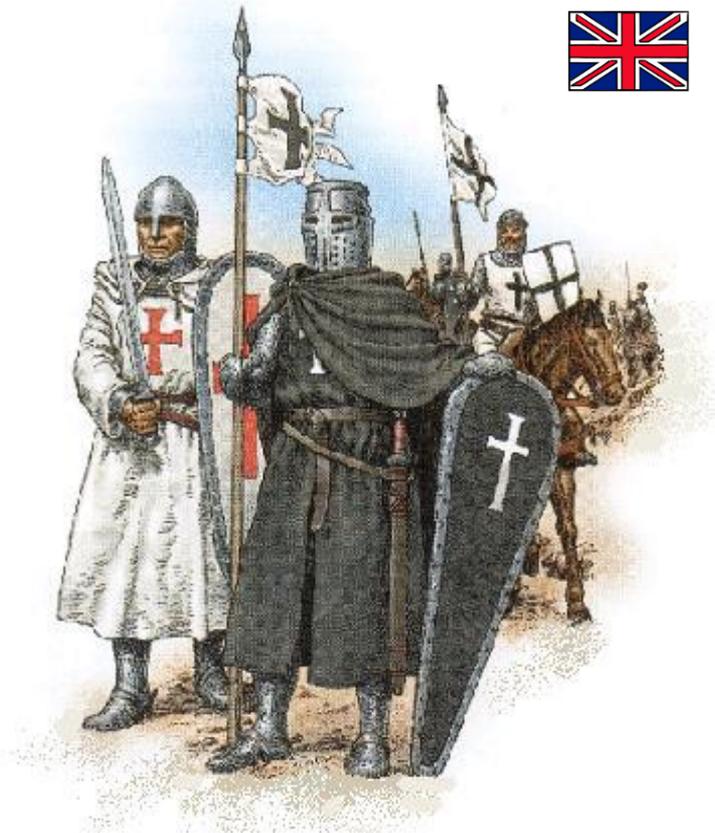
# 상속재산의 자산관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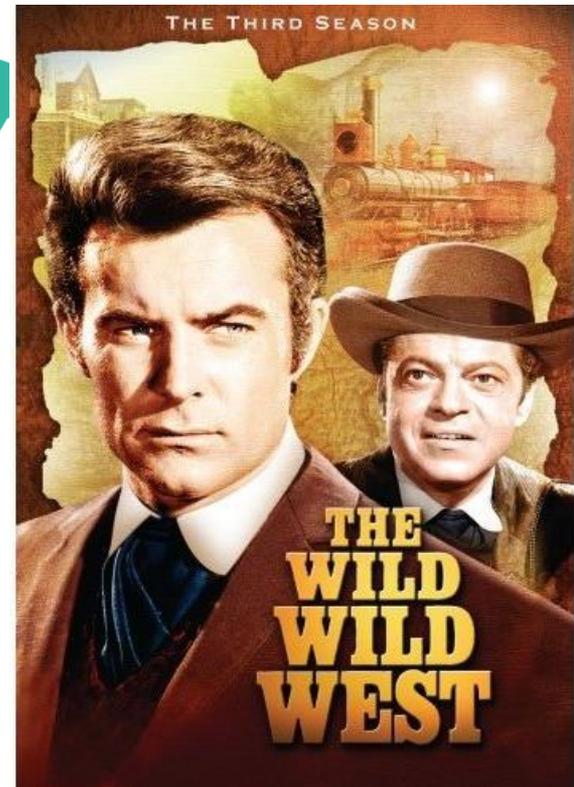
- ONE 계약 솔루션 제공으로 인한 종합영역으로 편입

# 신탁의 기원

❖ 영국



❖ 미국



# 신탁의 구조 & 핵심

- 신탁의 기본구조



- 신탁의 핵심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와 **경제상의 소유자**를 분리시키는 것  
수탁자는 **보통법상의 권리**인 법률상의 소유권(legal title)을 가지고, 수익자는 **형평법상의 권리**(equitable title)인 수익권을 가진다

# 신탁의 주요 특성

## ■ 신탁의 특징

- ① **신탁재산의 독립성** :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되고 수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독립된다.
- ② **도산격리(insolvency protection)** : 위탁자의 파산재단에도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의 파산재단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 ③ **강제집행금지**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수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 ④ **신용위험관리** : 수익자가 위탁자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됨으로써 수익자가 대단히 강력하게 보호된다.

# 2020.03.22 신탁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 PICK

## [단독] 40년 만에 뒤 흔들린 상속제도...법원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에서 제외"

기사입력 2020.03.22. 오후 3:13 최종수정 2020.03.22. 오후 5:0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사망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셈이어서 상속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최근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고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며느리는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위해 사망 3년전에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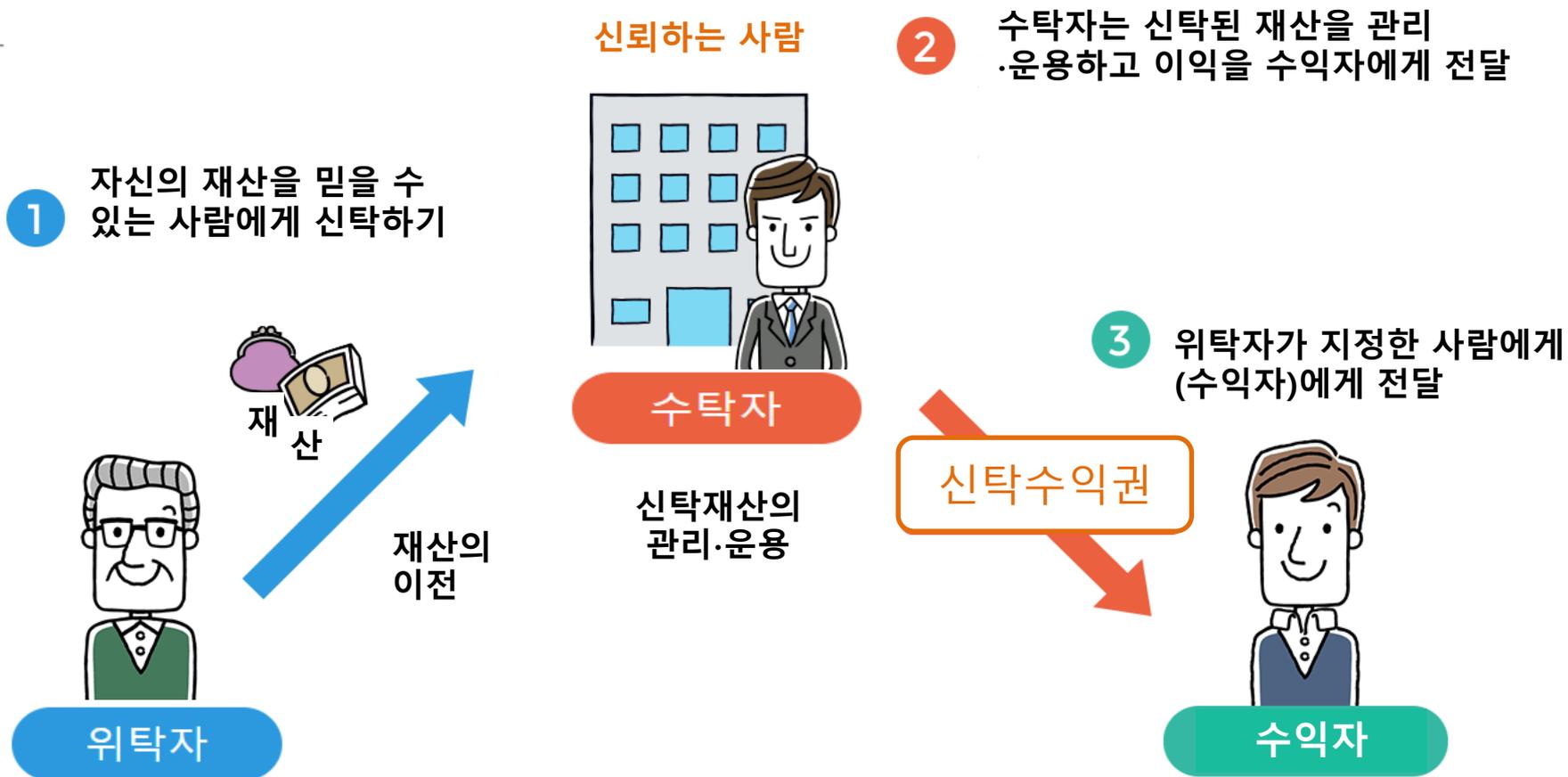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범위를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다.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갖는다”며 “신탁계약 또한 3년여 전에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

피고를 대리한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 법리가 정착되면 고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고는 1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mailto:peux@hankyung.com)

# 신탁의 주요 특성

## ■ 신탁의 구조



# 유언장 vs 신탁

## ■ 자산승계 시 유언제도 와 신탁의 차이점

### 1 세대간 연속 상속 가능 여부

#### ■ 특징

세대간 연속적인 상속설계 가능

#### ■ 차이점

유언서 : 부모가 사망시 자녀 또는 손자에게 이전

신탁 :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주되, 자녀가  
혹시 사망하면 손자에게 연속지정 가능  
예) A → B → C

### 2 상속 후 재산관리의 문제

#### ■ 특징

상속 후 재산관리 가능

#### ■ 차이점

유언서 : 상속 시 상속집행

신탁 : 상속 후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신탁  
관리 후 집행 가능

#### ■ 어느 분께 권할까요?

미성년자 등 상속 후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 하나 Living Trust VS 유언장



동일

### 상속의 효력

유언서 : 민법

신탁 : 신탁법 59조

### 3 상속집행의 투명성

#### ■ 특징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속집행 가능

#### ■ 차이점

유언장 : 피상속인 사망 후 집행인의 조율기능 필요

신탁 : 피상속인 사망 시 신탁이 집행인의 역할 수행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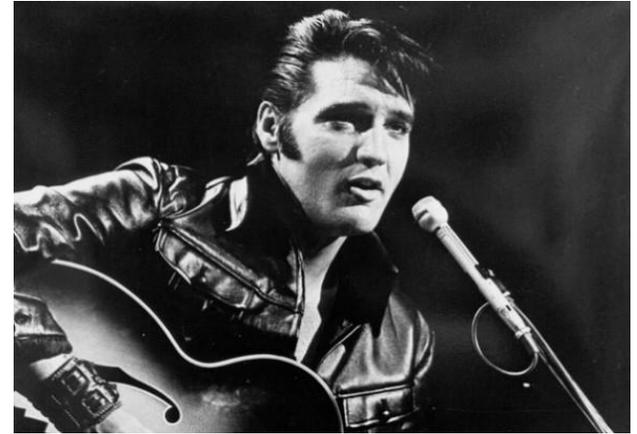
# 유명인사들도 신탁을 했다



월트 디즈니 (1901~1966)



마이클잭슨 (1958~2009)



엘비스프레슬리 (1935~1977)



스티브잡스 (1955~2011)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100년 Living Trust Center

# Contents

---

01\_신탁이란 ?

02\_신탁활용사례

03\_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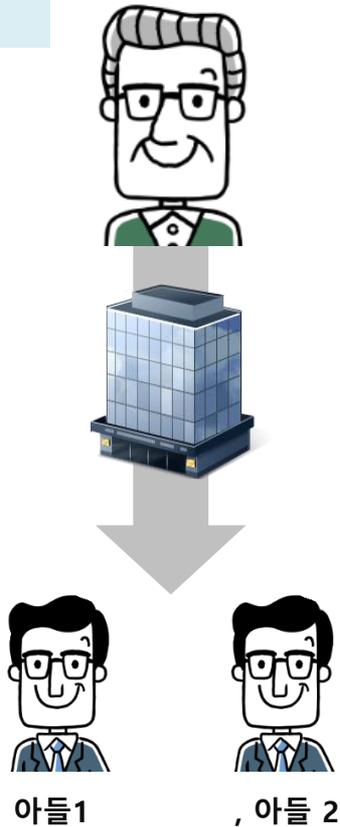
##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I	내맘대로 상속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등상속설계</li> <li>▪ 유산기부로 내삶의 흔적 남기기 '기부신탁'활용</li> <li>▪ 해외거주 상속인들 앞 자산승계 플랜</li> </ul>
II	내 노년을 지키는 노후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를 위한 플랜</li> <li>▪ 내 노후의 자산관리 통제기능 실현</li> </ul>
III	사후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amp; 손자 잇는 명문 자산가의 사후자산관리 플랜</li> </ul>
IV	유산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세제관련 절차지원</li> <li>▪ 효과적인 상속지원 &amp; 상속이후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li> </ul>
V	기업승계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족 간 법적 다툼의 가능성 예방</li> <li>▪ 다수 기업 간 사업승계 목적의 차별화 실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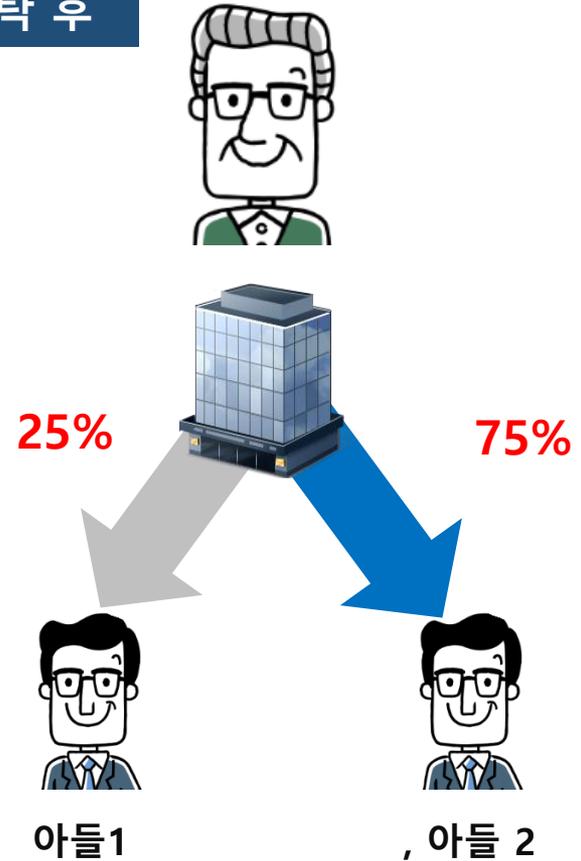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 내 맘대로 상속설계

신탁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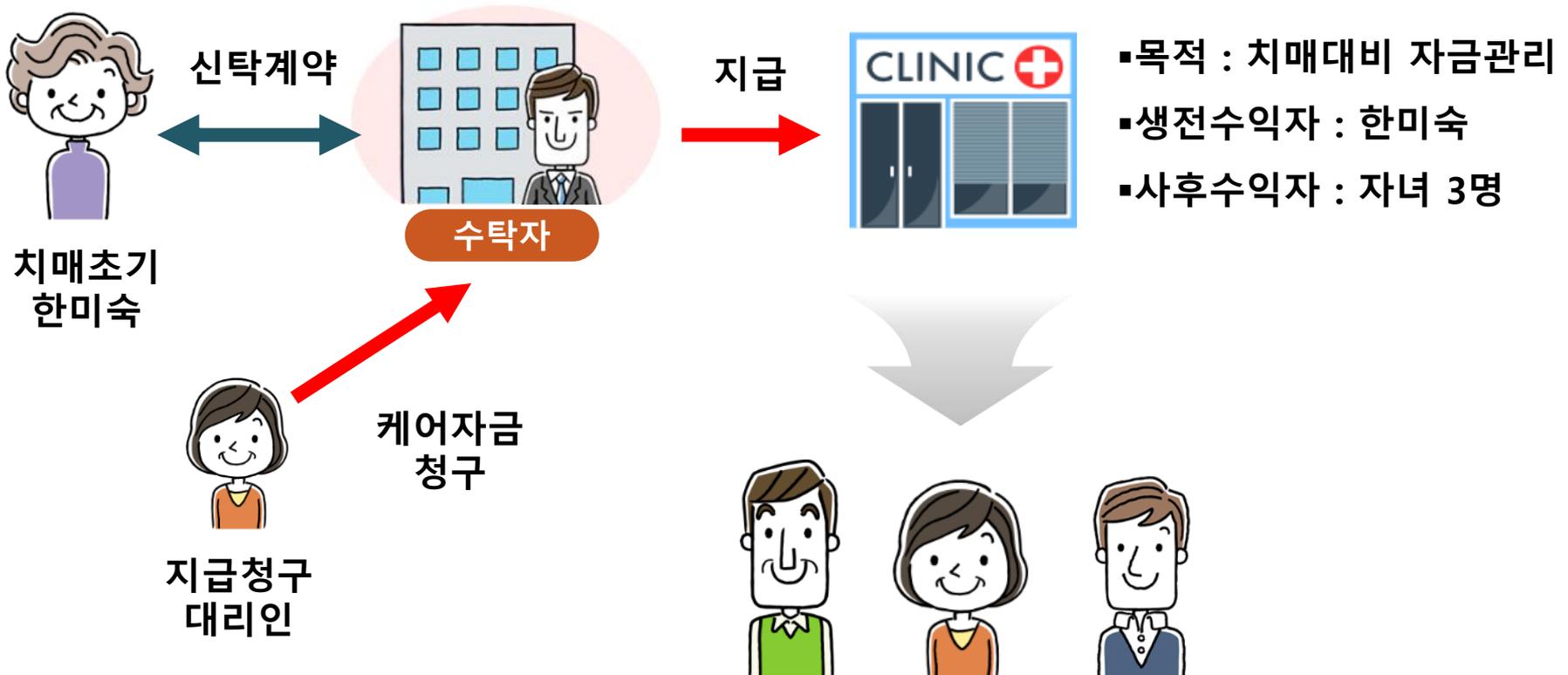
신탁 후



▪ 차등배분 설계에 따른 상속설계 &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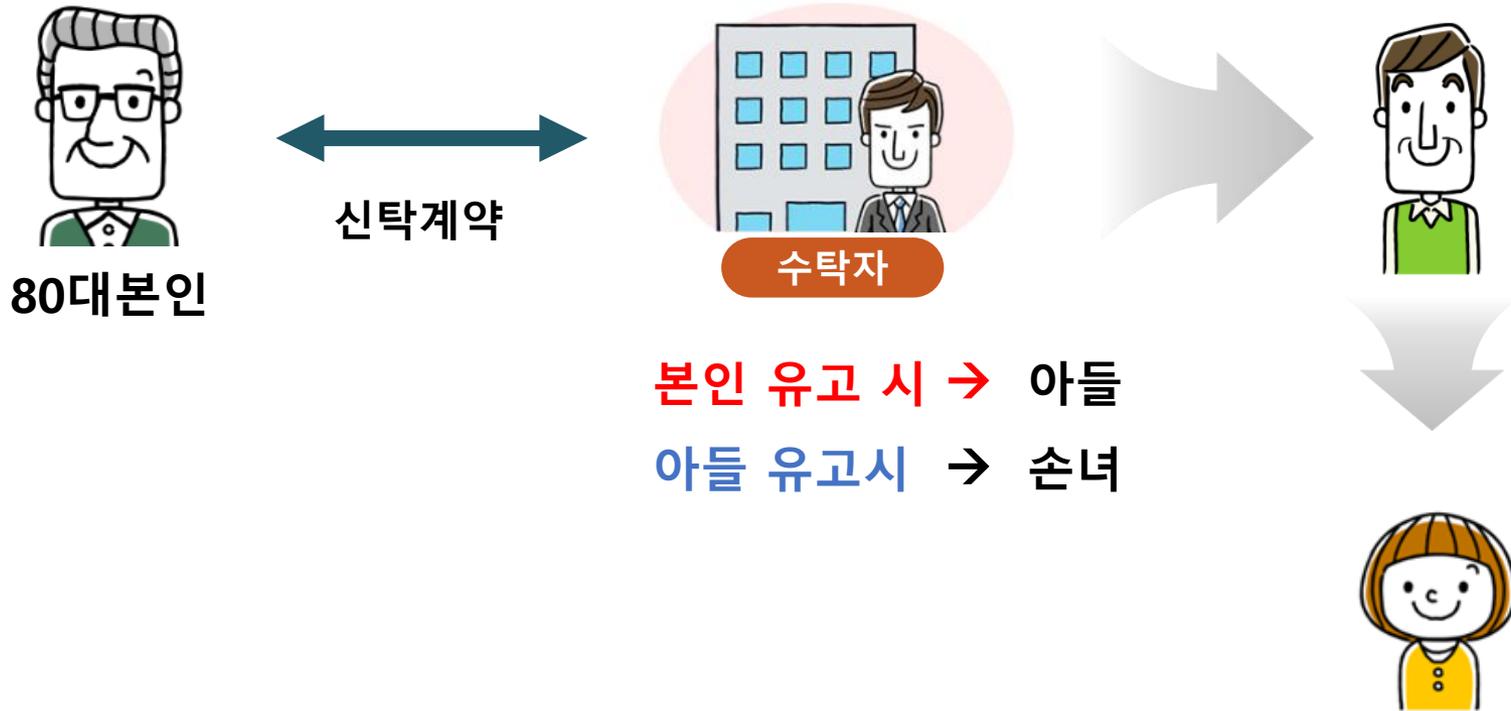
## 내 노년을 지키는 노후케어



▪ 위탁자의 노후Care 와 치매를 대비한 생존 케어 기능 실현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 ■ 사후 자산관리



■ 위탁자의 사후 고민까지 해결 사후관리 설계 기능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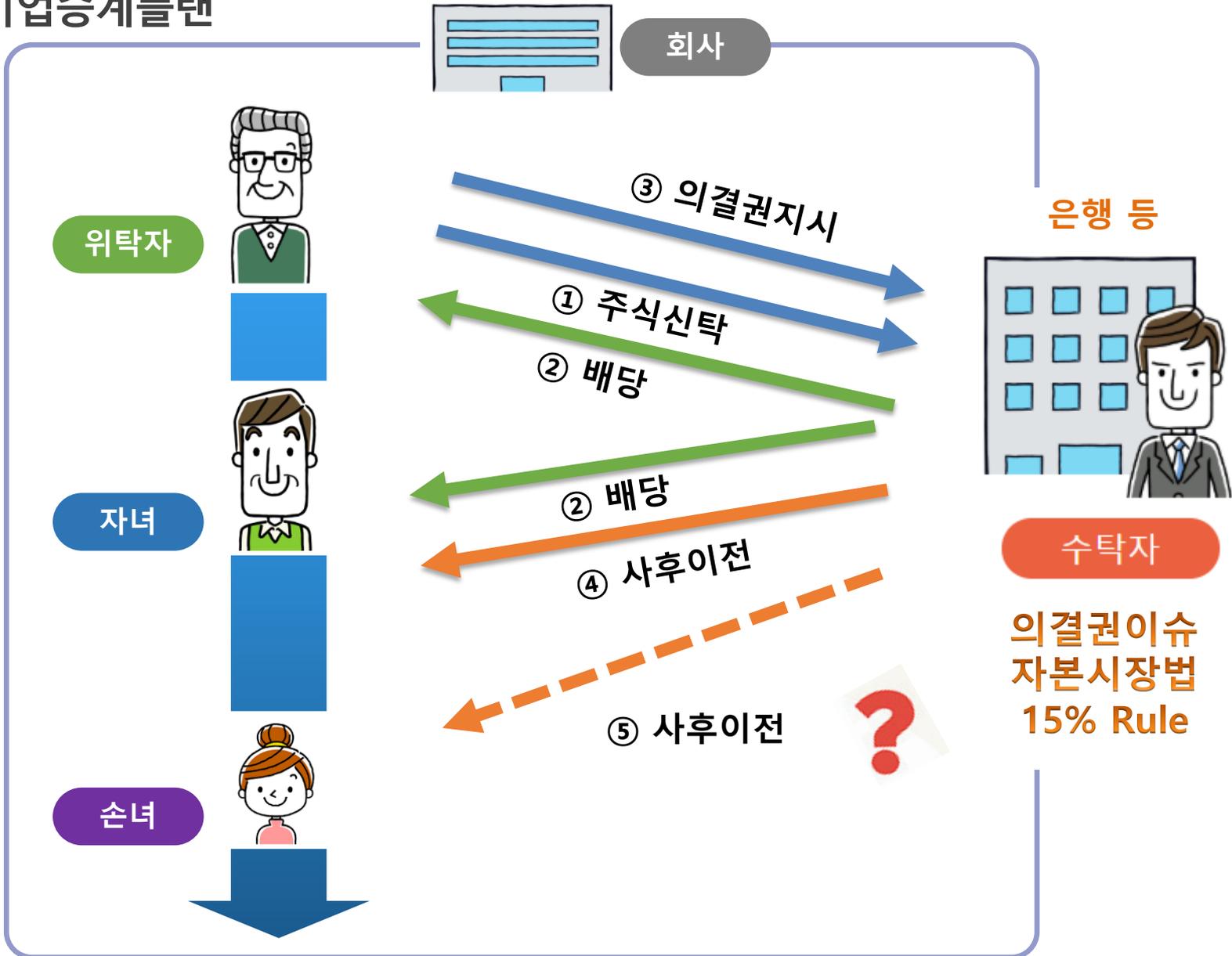
## ■ 유산정리



■ 유산정리 전문팀 One-Stop 솔루션 제공 “상속 내비게이션”

# 개별 맞춤형 신탁활용

## ■ 기업승계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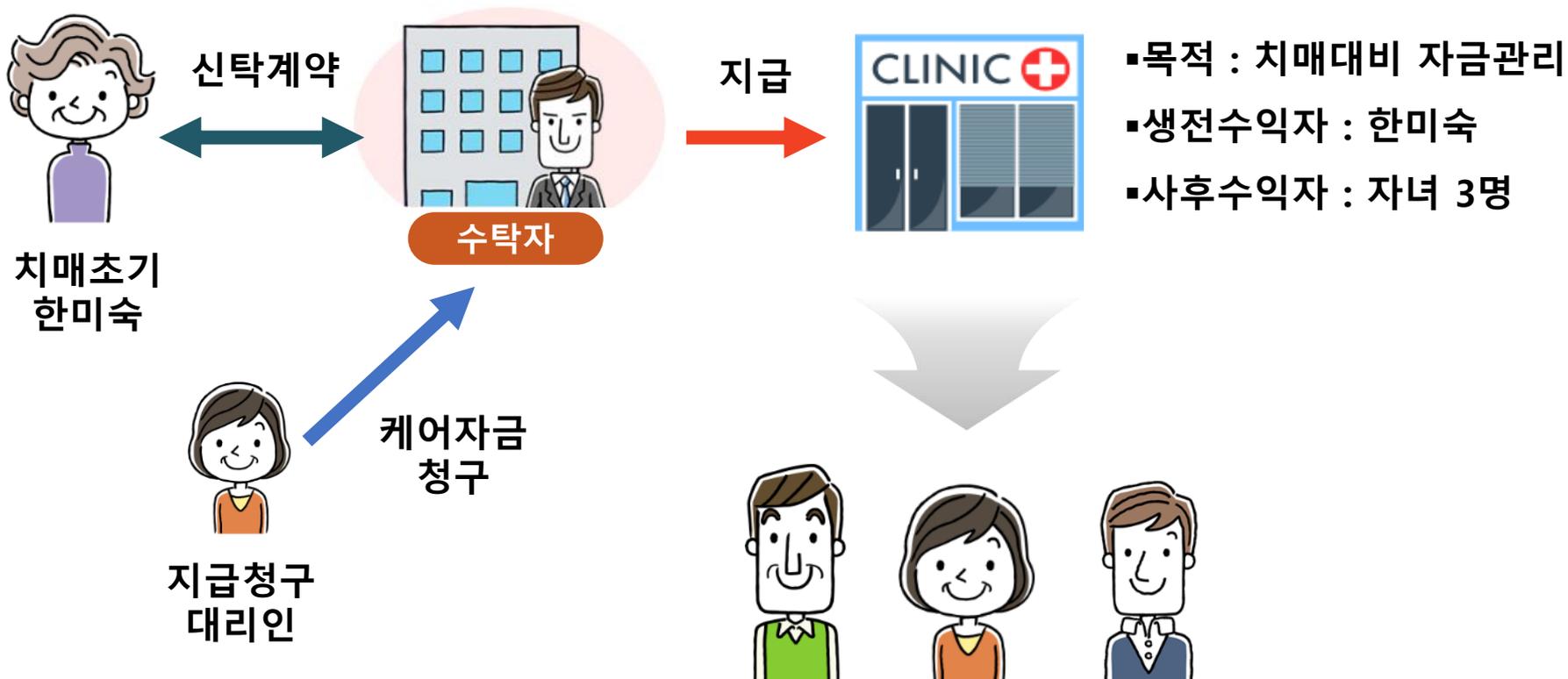


## ■ 복지금융 신탁활용

I	치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의 치매대비 재산관리 지원</li> <li>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li> </ul>
II	후견 &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재산관리의 객관성 &amp; 투명성 확보 '성년후견지원신탁'</li> <li>임의후견계약과 결합한 신탁활용</li> </ul>
III	미성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대받은 미성년자녀를 지켜준 신탁활용</li> <li>성년이 되기 전 조부모의 마음 지키는 신탁활용</li> <li>양육비 분쟁방지를 위한 선택 '양육비지원신탁'</li> </ul>
IV	장애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장애인신탁'활용</li> </ul>
V	구조금 자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자구조금 후견신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li> <li>국가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재산관리를 위한 '보상금신탁'</li> </ul>

# 치매대비 · 경제적 학대 예방

## 내 노년을 지키는 노후케어 + 금융사기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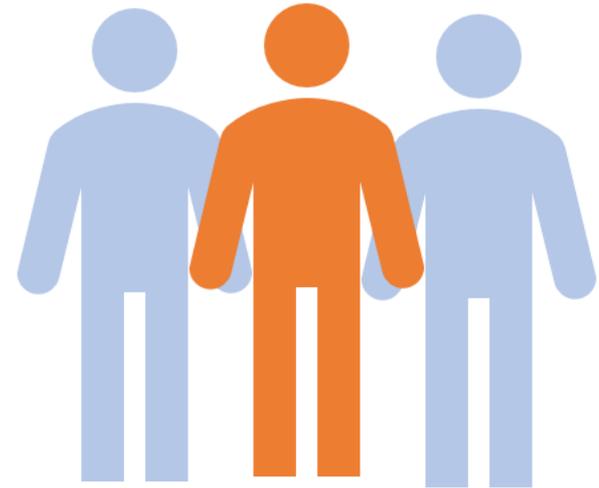


▪ 위탁자의 노후Care 와 치매를 대비한 생존 케어 기능 실현

# 후견 &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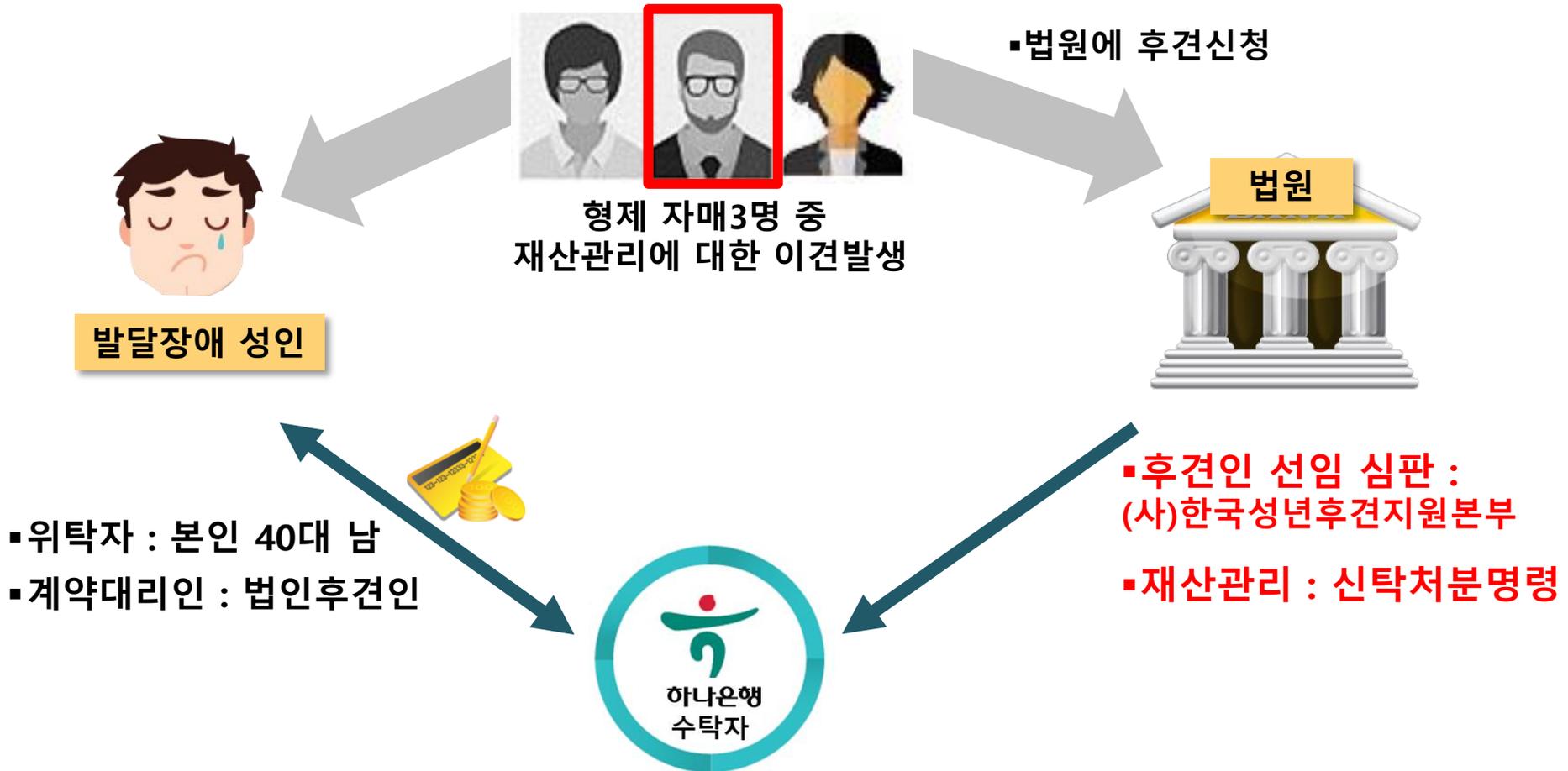
##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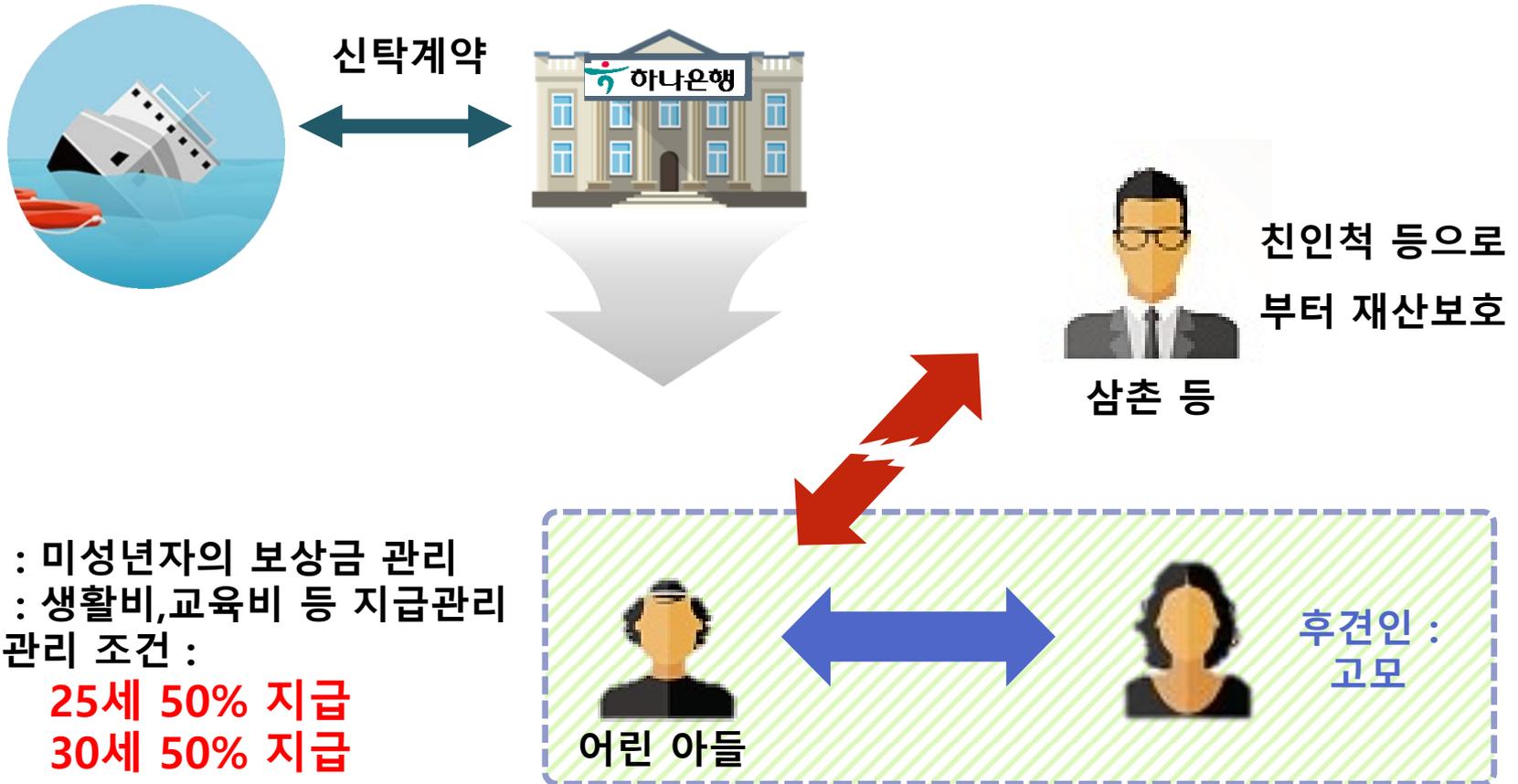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활용

## 법정후견과 성년후견신탁



# 미성년 보호를 위한 신탁활용

## 재난으로 부모 잃은 미성년 보호



# 장애인 신탁 및 장애인 비과세 활용

신탁을 활용한 세제혜택		보험을 활용한 세제 혜택 (상증세법 제46조)
현행	개정안	
<p>◆ (적용대상)</p> <p>-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p>	<p>➤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p> <p>-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타익신탁)하는 경우</p>	<p>연간 <b>4천만원의</b> 연금은 비과세</p>
<p>◆ 요건</p> <p>-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p> <p>-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p> <p>◆ 한도) 5억원</p> <p>◆ 추정) 원금인출 등으로 신탁재산 감소시 증여세 추정</p> <p>-아래의 원금인출은 증여세 추정 예외</p> <p>-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p> <p>-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p> <p>&lt;추가&gt;</p>	<p>(좌동)</p> <p>(좌동)</p> <p>◆ 추정사유 완화</p> <p>-증여세 추정 예외사유 추가</p> <p>(좌동)</p> <p>-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p> <p>-신탁수익이 월<b>150만원에</b>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p>	<p>-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p> <p>-자녀가 연간 수령한 보험 4천만원 한도 비과세</p> <p>-연금보험 활용 가능</p>

## ■ 복지금융 \_ 범죄피해자구조금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세요!



흑석동 화재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회의



- 일시 : 2018년 05월 15일 15:00~17:00
- 장소 : 동작경찰서 동행회의실

2018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개최



## ■ 부동산 신탁활용

I	부동산관리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객 보유건물의 임대차 관리</li><li>▪ 시설지원, 자금관리, 현황보고</li></ul>
II	부동산처분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투명한 매각지원</li></ul>
III	부동산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후화된 부동산에 대한 신축지원</li></ul>
IV	부동산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후화된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li></ul>

## ■ 부동산관리 신탁



위치	성남 증원구	신탁 사유
대지면적	684 m <sup>2</sup>	- 준공 10년차 빌딩 신규 매입 /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
건축면적	541 m <sup>2</sup>	- 관리경험 부재 및 시간제약 (의료업)
연면적	5,715 m <sup>2</sup>	- 공실율 35%
		운영 결과
층	B3 / 8F	-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공사 추진
설정년도	2007년~	- 공실율 5% 달성
		- 임대수익 15% 증가 / 관리비 수익 20% 증가



위치	서울 송파구	신탁 사유
대지면적	596 m <sup>2</sup>	- 위탁손님 고령
건축면적	283 m <sup>2</sup>	- 관리자의 보증금 횡령
연면적	1,207 m <sup>2</sup>	- 공실율 25% 등 관리부재
		운영 결과
층	B1 / 4F	- 관리인 법적문제 해소 지원 (일부 배상)
설정기간	2006년 ~	- 현재 공실율 0%
		- 신탁전 대비 임대료 9% 상승

## 부동산처분 신탁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Solution**



부동산 매각에 대한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및 안전한 이전까지  
**One-stop Service**



## ■ 보급형(금전전용) 생활금융신탁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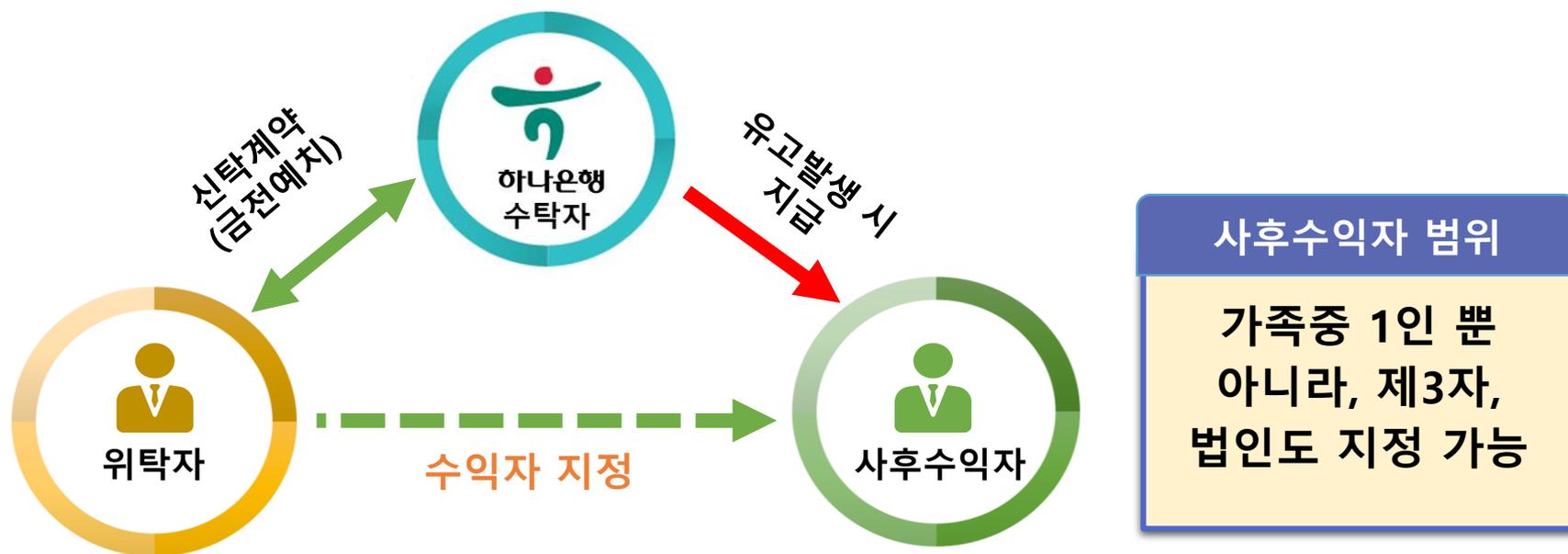
I	가족배려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원이상, 사후수익자를 위한 금전유언대용신탁</li> </ul>
II	보험연계케어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상품과 연계한 노후케어서비스 지원</li> </ul>
III	100년안심행복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사기예방, 치매대비 지급청구기능, 상속기능</li> </ul>
IV	100년운용종합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계좌를 통한 운용과 상속의 기능 결합지원</li> </ul>

## ■ 신탁 & 기부 활용

I	유산기부 신탁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전 &amp; 실물재산의 사후 유산기부 지원</li> </ul>
---	-----------	---

# 생활금융신탁 활용

- 신탁을 통한 고인의 유지에 맞는 분배 역할



## 기대 효과

- 생전에는 본인이 자산관리 후 사후 공정한 분배 역할
- 관리인은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으로 지정 가능 하여, 위탁자가 유고 시 사후수익자로 귀속 하여 사후 처리 자금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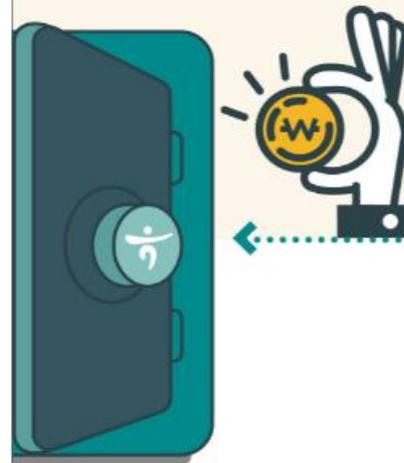
## 보험이라 안심!



(무)안심케어연금보험

 하나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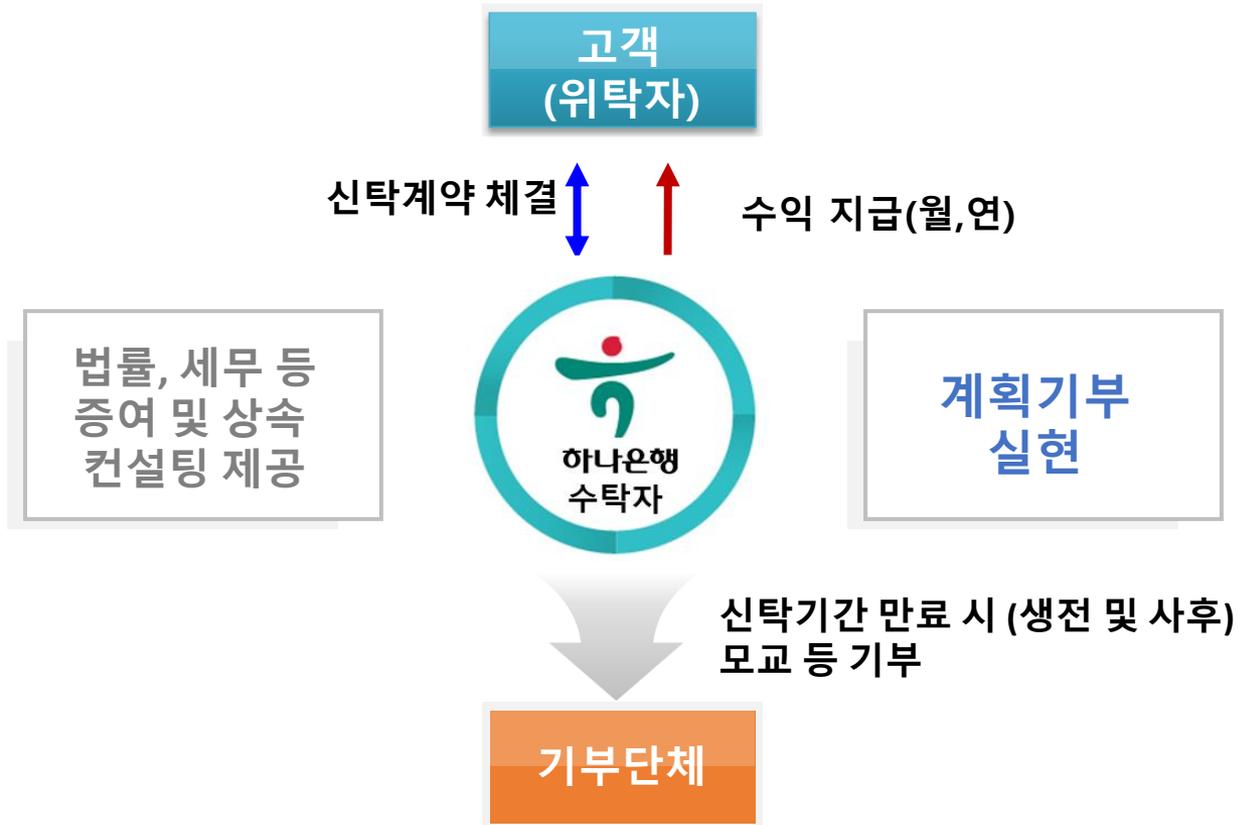
## 신탁이라 든든!



KEB하나 케어신탁

 KEB 하나은행

## 신탁재산 - 금전, 주식, 부동산, 금전채권



- 특징**
- ✓ 기부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근심 → 생전 노후생활 지원, 사후 기부 니즈 충족
  - ✓ 계획기부 실현 가능 → 법률, 세무, 신탁, 금융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한 계획 기부 실현

##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국회서 열려..."유산기부시 상속세 감면해야"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09-10 17:43:41 최종 수정일 2019-09-10 1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약 0.5%인 4853억원 수준...영국은 33%-미국은 8% 재산 10% 이상 유산기부 시 상속세 10% 감면法 정기국회 통과 필요성 제기 유산기부 사용 투명성 높이고 사업결과 정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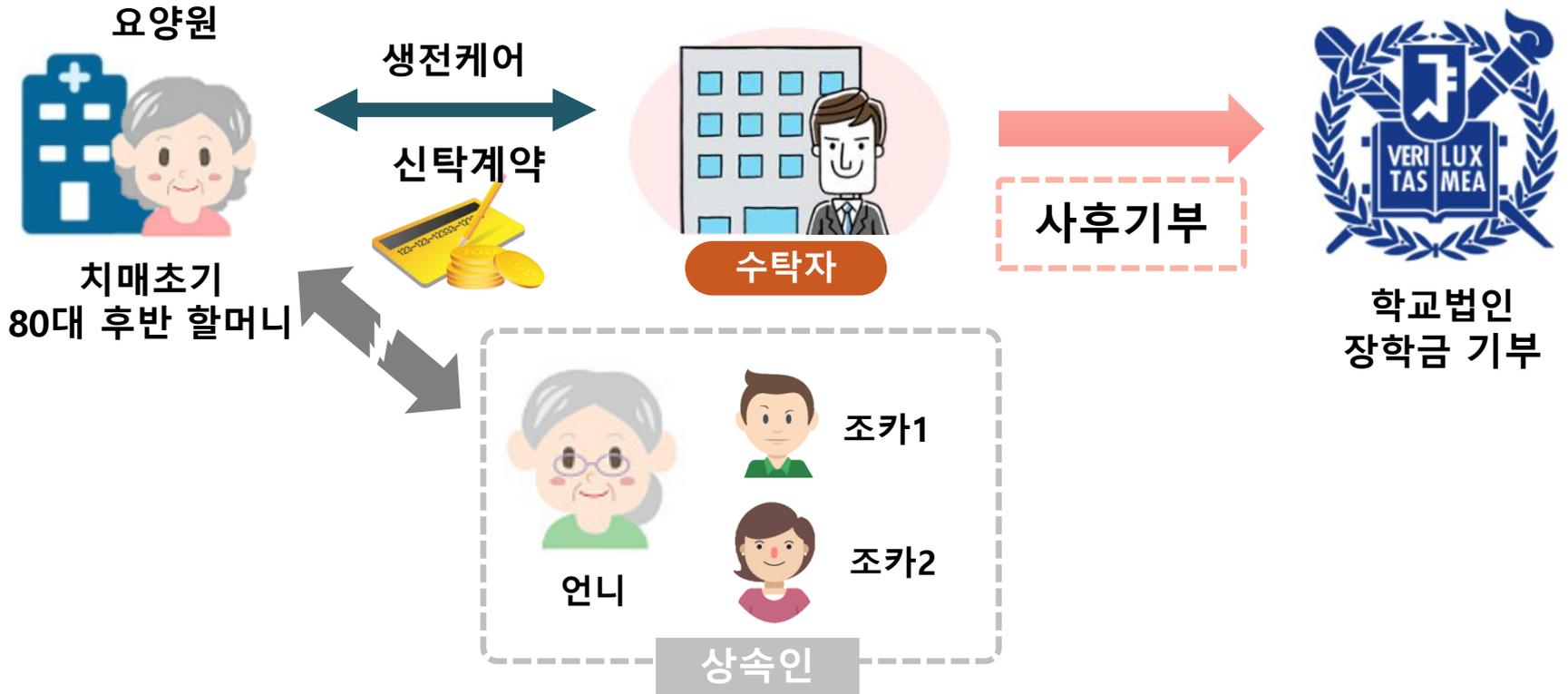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유산기부의 날'인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국회 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재산의 10% 이상을 유산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 유산기부 신탁활용

- 유산기부로 내 삶의 흔적 남기기\_ '금전 기부'



- 신탁계약 : 생전에는 요양비, 생활비로 사용 → 사망하면 남은 재산 "기부"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CONNECT**

100년 Living Trust Center

# Contents

---

01\_신탁이란 ?

02\_신탁활용사례

03\_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 ■ 시사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탁은 단순히 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승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으로 인생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담아 내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신탁계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금융수요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승계플랜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와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금융의 만물상자와 같은 신탁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과 노력이 요구된다.

# 신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01

## 신탁업 분류 재편

- 재산별 → 기능별(운용형, 관리형)
- 재신탁 / 신탁대리점 제도 도입 → 새로운 공급자 출현

	AS-IS	TO-BE	비고
인가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금전 부동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와 운용 구분 등 기능과 목적별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증대</li> </ul>
최저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 250억</li> <li>▪ 금전 : 130억</li> <li>▪ 재산 : 120억</li> <li>▪ 부동산 : 100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별 역할에 따라 최저자기자본 요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 참여자 확대</li> </ul>
재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법에만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관별 재신탁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간 협업 확대</li> </ul>
신탁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법 도입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대리점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접근성 증대</li> </ul>

## 02

###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내부변화 필요

- 내부체질 개선 필요
- 시대흐름과 고객Needs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 개발능력 제고

	AS-IS	TO-BE	비고
조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재산별 업무수행 예) 금전팀, 재산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체계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고민해결 가능성 증대</li> </ul>
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전신탁 자금의 수익률 위주 상품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대흐름과 새로운 금융 Needs에 부합 상품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 본연의 자산 관리 기능 확대</li> </ul>
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상품 중심의 전문가 로드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생애설계 및 패밀리 서포트 전문가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전문서비스 종합 컨설팅</li> </ul>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단기성과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적 기반 확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 인식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산정방식 검토</li> </ul>

03

## 신탁재산 확대 : 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 열거주의 방식 → Negative방식 → 새로운 금융 수요 창출

	AS-IS	TO-BE	비고
수탁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법 제103조 열거된 재산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재산의 종류를 열거주의에서 Negative방식으로 확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本 2004년 열거주의 →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완료</li> <li>다양한 재산에 대한 신탁으로 자산관리와 보호 기능 확대</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명보험금의 신탁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 나뉨</li> </ul>		

04

## 운용방식 변경 : 자본시장법 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단독운용 → 장기관리 목적자금 합동운용 허용

	AS-IS	TO-BE	비고
금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형 목적자금의 합동운용 예외적 허용 (예 : 치매대비, 셀프장례, 후견대비 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형신탁의 합동운용 및 원본보전을 통한 안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으로 운용 자산은 자본시장법 제105조에 열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확대 필요 (예 : 금전의 보험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의 보험과 신탁을 통한 보호기능 확대</li> </ul>
불완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상품가입 절차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능 (금융사고대비, 치매의 경우 지급청구인 기능, 노후케어기능 등) 부가기능이 있는 관리형 금전신탁은 가입절차 정비 필요</li> </ul>	

05

## 제도개선

- 신탁의 비대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
- 생활 속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제도 개선

	AS-IS	TO-BE	비고
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촬영등의 한정된 방법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입 방법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가입</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금전신탁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목적 신탁의 경우 자유로운 홍보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목적 외 다양한 기능의 자산관리 신탁 활용 증대</li> </ul>

## 06

### 세제 정비 및 세제 혜택

- 신탁 활용에 적합한 세제 정비
- 치매대비 관리목적의 신탁에 일정한 세제한도 부여
- 기업승계 관련제도 개선 : ex)세제혜택 확대, 의결권제도

	AS-IS	TO-BE	비고
신탁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세법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적용 세법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별도세제원칙</li> </ul>
기업승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세법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승계신탁으로 인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의 활용 확대</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목적 신탁 또는 자녀양육비 등 일정한도 내 세제혜택부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 교육자금 신탁(1천5백만엔)</li> <li>▪ 양육비지원신탁(1천만엔)</li> </ul>

07

## 신탁의 장애 및 후견분야 신탁활용 확대

-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피후견인의 재산 → 신탁 의무화

	AS-IS	TO-BE	비고
장애인 신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장애인신탁 주요 개편내용</li> <li>① 부모와 위탁자로 신탁하고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가능</li> <li>② 월150만원 限 신탁수익차액범위 내 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한도 증액 (예: 현재 5억 → 10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신탁 세제 확대 필요</li> </ul>
특별수요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수요신탁을 통해 국가지원 혜택 유지</li> </ul>

#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100년 Living Trust Center